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6 선고 2016가합512915 판결 [구상금등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16. 11. 22.

판결 선고2016. 12. 16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,801,230원 및 그 중 813,799,627원에 대하여 2016. 2. 26.부터 2016. 3. 21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0. 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. 10. 7. 접수 제209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5. 7. 22.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 사이에서 보증원금 8억 원, 보증기한 2016. 7. 21.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. 7. 29.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10억 원을 변제기 2016. 7. 21.로 정하여 대출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받았다.

다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

제6조(사전구상)

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(원고)로부터의 통지,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제5조(주채무의 이행의무)를 위반한 때

4. 전국은행연합회의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른 연체·대위변제·대지급·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0조(상환범위)

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1. 보증채무이행금액

2.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

3.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

4.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

6.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

라. 피고 회사는 2015. 10. 1.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마.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. 2. 26. 중소기업은행에게 연체 대출원리금 819,652,336원(= 대출원금 799,993,212원 + 이자 19,659,124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 이후,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. 2. 26. 5,852,709원을 변제받아 대위변제원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고,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813,799,627원(= 819,652,336원 - 5,852,709원)이 되었다.

바. 한편, 2016. 2. 1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%이다.

위 지연손해금률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 후 회수한 5,852,709원에 대하여는 확정손해금 1,603원(= 5,852,709원 × 10% × 1/365일)이 발생하였다.

사. 피고 B은 2015. 10. 5.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달 7. 피고 C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09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회사,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,801,230원(= 813,799,627원 +

1,603원) 및 이 중 대위변제금 잔액 813,799,6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. 2. 2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. 3. 21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5. 10. 5. 체결된 사실, 피고 회사는 2015. 10. 1.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가 2016. 2. 26.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위 변제한 사실은 앞서 1.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.

그러나,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5. 10. 1. 피고 회사에게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813,801,230원 상당 구상금 채권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

앞서 든 각 증거,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

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각 재산상태가 아래 [표1], [표2] 기재와 같음을 알 수 있다. 다만,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,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갑 제7, 8, 1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. 7. 31. 채권최고액 168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B, 근저당권자 서석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,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가까운 2016. 11. 22. 현재 적어도 120,000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 B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서석농업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(아래 [표1] 순번 1항 아래의 서석농업협동조합 피담보채무 부분), 이하 [표1]에서 마이너스 처리 된 부분은 모두 그 금액의 바로 위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액으로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들이다(굵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들로서, 이하 같다).

1	이 사건 토지	별지1 순번 제1항 기재 토지	19,680,000
별지1 순번 제2항 기재 토지	45,816,000		
별지1 순번 제3항 기재 토지	86,636,800		
별지1 순번 제4항 기재 토지	22,800,000(=1,900m ² ×12,000원)		
합계	174,932,800		
2	서석농업협동조합 피담보채무	-120,000,000	
강원도 홍천군 D 답 2,066m ²	39,254,000		
3	서석농업협동조합 피담보채무	-25,000,000	
강원도 홍천군 E 임야 45,620m ²	52,006,800(=45,620m ² ×1,140원)		
4	F 피담보채무	-150,000,000	
강원도 홍천군 G 전 13,010m ² 1/3 지분	112,751,600		

1	이 사건 토지	별지1 순번 제1항 기재 토지	19,680,000
합계	83,945,200		

1	원고	819,652,336
2	중소기업은행	211,439,000
합계	1,031,091,336	

다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,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(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5다47106, 47113, 47120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C가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 C는 2015. 5. 27. 피고 B에게 150,000,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

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5. 5. 27. 피고 B와 사이에 1억 5,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,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혼합금리모기지론으로 1억 5,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앞서 인정한

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,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은 위 1억 5,000만 원 대여일인 2015. 5. 27. 무렵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5. 10. 1. 이후인 2015. 10. 7.인 사실, 피고 C와 피고 B이 처남·매부관계인 점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서석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자력에 관한 인식을 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마. 소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.

재판장판사 전지원

판사 어준혁

판사 김초하

별지